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 평가와 전망

1998. 9

諸 成 鎬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1
II. 1998년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경과	2
III.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	4
1.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4
2.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	4
IV. 북한인권 결의안의 분석 및 평가	6
1.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탈퇴 불인정	6
2.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	6
3. 북한 정부에 대한 인권개선 및 협조 제공 촉구	7
4.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기 및 대북 지원 요청	9
5. 북한의 유엔보고서 심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	10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근거 확보	10
V. 북한의 반응과 향후 전망	12
1. 북한의 반응	12
2. 향후 전망	13
VI. 고려사항	16
<부록 1> 1998년도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국·영문	18
<부록 2> 1997년도 제49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국·영문	24
<부록 3>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소위 현황	29
<부록 4>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문제 거론 경과	31

I. 문제의 제기

○ 유엔인권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소위라 함)는 1998.8.3~8.28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50차 회기를 개최하였는 바, 8.19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유엔인권소위: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산하의 소위원회로서 정식명칭은 「소수민족의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 1947년 설치된 유엔인권소위는 각국별 인권, 기본적 자유, 민족·종교차별 문제 등을 토의·권고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박상용 위원(전 외무부 본부대사) 등 26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유엔인권소위의 위원들은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과는 달리 정부 대표 자격 불보유

○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이번에 채택된 유엔인권소위의 대북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본 보고서는 제50차 유엔인권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평가하고, 북한의 반응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II. 1998년도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경과

- 1998년도 유엔인권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초안)은 프랑스의 Louis Joinet 위원에 의해 영국, 노르웨이,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이집트, 우간다 위원 등 9명에 의해 공동제안되었음.
 - Joinet 위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1997.8.21 제49차 유엔인권소위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북한인권문제는 '양심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

-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위원들이 당초의 반대 및 기권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하여 지원국이 증가하였음.
 -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북한이 Weissbrot 미국 인권위원회에 대해 보였던 무례한 행동은 다른 유엔인권소위 위원들을 자극, 찬성입장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

- 그 결과 제50차 유엔인권소위는 1998.8.19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찬성 19, 반대 4, 기권 1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할 수 있었음.
 - 대북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북한내 인권조사 활동을 허용하고, 1999년 유엔인권소위에서 심의토록 권고
 - * 1997.8.21차 북한인권 결의안의 경우 찬성 13, 반대 9, 기권 4로 채택

○ 한편 이번 유엔인권소위에서는 북한 이외에 벨로루시 인권결의안이 채택(17:4:3)되었고, 알제리 인권결의안은 부결(10:10:4), 바레인 인권결의안은 철회되었음.

- 아울러 제50차 유엔인권소위는 8.21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군대위안소는 강간센터로 일본은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McDougal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일명 맥두갈 보고서)를 환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Ⅲ.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

1.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북한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극도로 어려우며, 특히 북한 정부가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를 계속 탄압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 입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함.
- 북한내에서의 불법처형 및 실종에 관한 빈번한 보고와 수천명의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심각한 학대에 따라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함.
- 다만 1998년 5월 북한이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 심의에 참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함(이상은 전문 및 제1항).

2.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

-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약칭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2조에 따라 자국민에게 '출입국의 자유'(외국으로 출국할 권리와 자국으로 귀환할 권리)를 보

장할 것을 긴급 촉구함(제2항).

○북한 정부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제3항)하는 한편,

-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 조사를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과 동 기구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북한내에서 간행·배포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함(제4항).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들이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제5항)과,

- 국제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주민의 기아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제6항).

○유엔인권위원회가 차기(제55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의할 것을 권고하며, 동 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내년도 제51차 유엔인권소위에서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함(제7항).

- 유엔인권위원회 차기 회기는 1999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

IV. 북한인권 결의안의 분석 및 평가

1.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탈퇴 불인정

○ 1997.8.21 제49차 유엔인권소위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동년 8.25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탈퇴한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하였으나, 아직까지 유엔인권위원회와 산하 인권소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10.29 「일반권고」를 통해 북한의 B규약 탈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

○ 금년도 제50차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인권규약 B규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2.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비난

○ 금년도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에서는 ‘우려한다’(concerned)라는 절제된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작년도 결의안 못지 않게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북한 정부의 인권개선 노력이 극히 미흡하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있음.

- 1997년도 결의안에서는 ‘우려한다(concerned)’, ‘심각히 우려한다(deeply concerned)’, ‘개탄한다(deploring)’라는 표현을 사용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난은 작년의 결의안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음.

- 1997년도 결의안: ①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② 북한인권 관련 정보 입수 및 북한방문의 어려움, ③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보고서의 미제출 등 일부 인권문제에 국한하여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

- 1998년도 결의안: ① 북한인권 관련 정보 취득의 어려움 외에 ② 언론인과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 ③ 불법처형과 실종, ④ 수천명의 정치범 억류, ⑤ 상당수 정치범에 대한 심각한 학대의 결과 질병·기아 및 유기로 인한 사망 등 북한의 인권탄압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특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정치범 수를 수천명으로 추정

3. 북한 정부에 대한 인권개선 및 협조 제공 촉구

○유엔인권소위는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개선 노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협조 제공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음.

-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

-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대한 북한의 인권상황 조사 허용 및 편의 제공

- 북한인권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의 북한내 간행·배포 허용

○ 이와 같은 촉구사항들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권 개선 요구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 및 강도가 작년에 비해 한 단계 심화된 것으로 평가됨.

- 1997년도 결의안은 ① 출입국의 자유 보장, ②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 ③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유엔의 절차에 협력을 촉구하는 데 한정

* 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유엔인권위원회와는 다른 기구

- 다만 북한인권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의 북한내 간행·배포를 요청한 것은 당장 실현될 것을 기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기

○ 작년에 이어 금년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 대북 촉구사항으로 명기되어 있음.

- 이는 국외로의 자유로운 이주가 불가능한 북한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러시아 등 제3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될 경우 극형에 처해지는 실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

- 1997년도 결의안에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이 명문화된 배경에는 탈북자들이 유엔인권소위 위원들에 대해 본인·가족들의 경험을 전달하고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

4.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기 및 대북 지원 요청

○ 유엔인권소위는 1997년의 결의안과 비슷한 수준에서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있음.

- 1997년도 결의안: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북한주민들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

- 1998년도 결의안: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들이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 금년 결의안에서는 작년 결의안의 후반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관심을 환기하는 근본취지는 사실상 동일

○ 아울러 유엔인권소위는 국제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주민의 기아와 경제난 해소에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북한주민의 기아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의 기초 위에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의 제공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1회성의 식량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 국제사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자재·기술 지원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평가

5. 북한의 유엔보고서 심의참여에 대한 긍정적 평가

○ 한편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에서는 북한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관한 최초보고서 심의에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일방적인 비난과 비판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 이는 유엔인권소위가 객관성과 균형성, 비정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한 흔적

○ 이러한 입장 표명은 향후 북한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 및 국제 인권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유엔인권소위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근거 확보

○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에서는 1999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차기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의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동 위원위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 차기 유엔인권소위에서 계속 토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이는 유엔기구 차원에서 계속해서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

○ 나아가 이번의 결의안은 1997년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당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일과성 관심 표명으로 치부하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하지 않았던 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V. 북한의 반응과 향후 전망

1. 북한의 반응

<유엔인권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 외면>

○북한은 유엔인권소위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지 5일 후인 8.24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동 결의안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유엔인권소위가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소식만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을 무시·외면하는 태도를 보였음.

-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 안건 제6장인 현대형의 노예문제 토의시 여러 비정부적 국제기구 대표들이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차원의 보상을 촉구했다”고 전하고,
- 특히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대표는 연설에서 “일본 당국이 과거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회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과거죄행을 사죄하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범죄의 재현을 막기 위한 인류 공동의 요구·과제”라고 강조하였다고 보도

<「국제인권규약 B규약」 재가입 검토방침 철회>

○북한은 8.25 유엔인권소위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발, 「국제인권규약 B규약」 재가입 검토방침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철 영사는 “우리나라를 고립시키고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정치적 게임은 「국제인권규약 B규약」 탈퇴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언급
- 아울러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재가입 시기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

<북한인권 결의안의 합법성에 대한 시비>

- 아울러 김성철 영사는 “유엔인권소위가 북한측 대표단과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함으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의 합법성 및 유효성에 시비를 거는 태도를 보였음.
- 그러나 이는 유엔인권소위의 확립된 절차와 국제관례에 명백히 배치되는 부당한 주장

2. 향후 전망

- 유엔인권소위에서 작년에 이은 두번째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이제 북한인권문제가 일시적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개선의 요구·압력을 받는 일회성·단발성의 관심사가 아니라,
- 국제적 양심과 도덕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는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북한이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바, 반발·외면·공격 또는 인권문제 존재 부인 등 다양한 태도를 시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입과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력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의 논리를 내세워 매우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

- 북한은 1994.7 국제사면위원회(AI) 보고서 발표 직후 고상문, 유성근 등 납북 억류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를 차단하려고 시도하였으며, 1997.8 천도교령 오익제의 월북 직후 '자진입북' 선전 및 북한내 인권문제 부인 성명을 발표하 바 있는데, 향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

○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북한은 점차 자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게 될 것임.

- 가시적인 실천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개선 압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대북지원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

- 이와 관련, 최근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재가입 검토방침 철회는 유엔무대에서 북한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전망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불법처형, 실종, 정치범의 억류·학대 등 심각한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향후 정치범에 대한 대규모 구금 및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비인도적 처우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유엔인권소위가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 북한인권문제를 심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스스로도 이 문제를 계속 취급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장차 북한인권문제가 토의의 차원에서 벗어나 가시적인 대책 마련의 단계로 진입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충분한 여건 성숙시 유엔인권위원회가 이른바 1503절차¹⁾를 가동하여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실태를 다룰 수 있음
- 1503절차의 가동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임명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짐
- 또한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측에 대해 유엔인권조사단 방북 허용 및 인권실태 공개 등 가시적인 조치도 요청 가능

1) 1503절차는 1970.5.27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 1503에 의해 유엔인권소위에 대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극심하고 믿을 만한 근거있는 위반의 지속적 관행」에 관한 통보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데서 유래함. 유엔인권소위는 동 결의 제1항에 의거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인권침해 관련 통보와 이에 대한 관련국 정부의 답변을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음.

VI. 고려사항

-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인권기본대책을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되,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추구 및 실질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함.
 - 현재 대북 햇볕정책 추진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소극적이거나, 원칙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당위성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

- 앞으로 정부는 유엔의 인권 관련 활동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유엔무대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의 협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EU 등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홍보 확대
 - 아울러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NGO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들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지원
 - * 북한인권 실상에 관한 탈북자들의 수기 및 출판물(국내외용) 등을 통해 국제여론 환기

- 한편 차기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소위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될 예정인 바,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인권외교 전개가 요구됨.
 - 외교통상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부, 안기부 등 유관부처간에 종합

적인 대응전략 강구 필요

- *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소위와는 달리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구임.

<부록 1> 1998년도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국·영문

북한인권상황 관련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E/CN.4/Sub.2/1998/L.7: 1998.8.14)

모든 유엔회원국이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인권규약(A, B) 및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임을 인식하고,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를 심의받은 것을 유엔협약기구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징후로서 고려하며,

1997년 8월 21일 인권소위 결의(1997/3)를 상기하면서 북한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극도로 어려우며 특히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들을 계속 탄압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내에서 불법처형, 실종에 관한 빈번한 보고와 수천명의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학대에 따라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려하며,

1.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 심의를 받은 것을 환영함.
2. 북한정부가 자국 및 외국으로 출국할 권리 및 자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긴급 촉구함.

3. 북한 정부가 유엔헌장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함.
4.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북한의 현 인권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북한내에서 간행, 배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5.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함.
6. 국제 인도적구호기구가 북한 주민의 기아와 여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7. 인권위원회가 차기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토의할 것을 권고하며,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상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1차 인권소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할 것을 결정함.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Sub.2/1998/L.7: 1998.8.14)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Reaffirming that all Member states have the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s stat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elabora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Recogniz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ide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examination of its initi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3/Add.41)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May 1998 to be an encouraging sign of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reaty bodies,

Recalling its resolution 1997/3 of 21 August 1997.

Concerned at the extreme difficulty in obtaining accura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en made even more difficult by the Government's persistent repression of independent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Concerned also at frequent reports of extrajudicial execution and disappearances with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at similar reports that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are currently being detained within the country, many of whom have suffered severe ill-treatment and have consequently died of disease, starvation, and exposure.

1. Welcomes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examination of its initi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Urgently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ensure full respect for article 1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oth of which relate to the right of anyon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r her own, and to return to his or her country

3. Requests the Government to cooperate fully with the procedures and service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to allow and facilitate inquiries by independent national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within the country and to allow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all findings insid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5. Invi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devote greater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6. Invites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enh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wareness of the effects of hunger and other economic difficulties for all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and to provide an substantial and effective assistance.

7. Decides to recommend that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consider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its next session and, if the commission is unable to take ac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consideration of the matter at the fifty-first session of the Sub-commission under the same agenda item.

<부록 2> 1997년도 제49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국·영문

북한인권상황 관련 제49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E/CN.4/Sub.2/1997/3: 1997.8.21)

소수민 차별방지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특히 동 선언 제13조와 북한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1996/22에 따른 공개절차에 회부된 국가명단(E/CN.4/Sub.2/1997/33)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하며,

북한에서 수용소내 대규모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위반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속적이고 일치되는 주장과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얻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련 법규와 그 적용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을 심각히 우려하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가 거의 10년간 지체되고 있음을 개탄하며,

1. 북한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날 수 있고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
2. 북한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여 인권이사회에 대한 기보고서 제출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인권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유엔에 의해 설립된 각종절차들에 협력할 것을 요청함.
3.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고립된 상황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함.
4.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게 현재의 식량부족과 이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N.4/Sub.2/1997/3: 1997.8.21)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Guided by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its article 13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Particularly its article 12,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Noting, in the light of resolution 1997/22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countries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ssion under public procedures(E/CN. 4/Sub. 2/1997/33. annex)

Concerned by persistent and concordant allegations that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being committed in that country including recourse to mass internments in administrative detention centres, and by serious restrictions affecting in violation of article 1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f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 of everyon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Deeply concerned by the virtual impossibility of obtaining information or visiting that country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re are grounds for the allegations concern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at country. and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legislation in force and the manner in which it is implemented.

Deploring, in this connection, the delay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submitting its first periodic report due now for almost 10 years.

1. Urgently calls 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full respect for article 13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oth of which relate to the right of everyon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2. Request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fulfil its obligations and delay no longer the submission of its first periodic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o extend its cooperation with the procedures and services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with the aim of ensuring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3. Invi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ote greater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us assist the population of that country in emerging from the isolation in which it is maintained

4. Also invi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rnish increased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help it to overcome the present period of food shortage and the suffering it is causing.

<부록 3>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소위 현황

<유엔인권위원회>

- 설립: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 구성: 임기 3년의 53개 위원국(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
 - 한국은 1993~1995년 및 1996~1998년간 인권위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 1998년 5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무투표로 1999~2001년간 인권위원국으로 재선
 - 북한은 현재 옵저버(observer)국
- 임무: 인권기준의 설정,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등
- 회의일정: 매년 3월 6주간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개최
- 특별조직: 특별보고관 및 실무위원회 제도 운영, 특정사항 조사
 - * 백충현 서울법대 교수: 아프가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1995.4 임명)

<유엔인권소위>

- 설립: 1947년(인권위원회 결정)

- 구성: 임기 4년의 26명 위원(전문가, 인권위 선출)
 - 박쌍용 전 외무차관이 1996.4 유엔인권소위 위원으로 피선

- 임무: 인권관련 활동,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한 권고,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

- 회의일정: 매년 8월 4주간 일정으로 제네바에서 개최

- 조직: 현재는 5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운영
 - 진정서 처리 실무작업반
 - 원주민문제 실무작업반
 -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실무작업반
 - 소수민문제 실무작업반
 - 사법·행정 및 인권문제 실무작업반

<부록 4>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문제 거론 경과

- 1994년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거론 이래, 매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인권소위에서 북한인권문제 거론
- 1997.8.21 제49차 유엔인권소위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 1997.8.25 북한, 이에 대한 항의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탈퇴를 유엔사무총장에 통보
 -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함께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1976년 3월 발효
 - * B규약은 현재 126개국 이 가입, 북한은 1981.9.14, 한국은 1990.4.10 가입
- 1997.10.29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반권고」를 통해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탈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
- 1998.4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국별 논의시 북한인권문제 거론
 -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B규약」 탈퇴, 양심수문제, 강제노동 및 표현의 자유 제한 등
- 1998.8.19 제50차 유엔인권소위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채택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운외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평가와 전망

統一情勢分析 98-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북한인권센터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901-2528(代), FAX:901-2542

印刷處 정선기획인쇄사 전화:268-9933

印刷日 1998년 9월 일

發行日 1998년 9월 일
